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옹벽을 내진설계기준 대상으로 추가〉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7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5.
3. 회부연월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에 “옹벽”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 ----- ----- ----- ----- ----- -----.
1. 「건축법」에 따른 <u>건축물</u>	1. ----- <u>건축물</u> 및 <u>옹벽</u>
2. ~ 32. (생략)	2. ~ 3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등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입을 우려가 있는 총 33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하는 시설 중 하나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 대지에 조성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옹벽²⁾³⁾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옹벽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옹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실익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옹벽을 포함한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인 2층 규모와 유사한 규모)을 축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붕괴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옹벽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2)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옹벽**: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표준국어대사전)

행정안전부 역시 현행 「건축법」 규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옹벽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옹벽의 내진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토목공사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옹벽 현황, 옹벽의 내진설계기준 부합 여부, 내진설계기준 달성을 위한 조치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건축물 및 옹벽 등 공작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건축법령」 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층수가 2층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u>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삭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u>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이하생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 4. (생략) 5. <u>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u>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 11. (생략) 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u>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u>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u>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u>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문 의 처

02)6788-5349